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3 호 2019. 5. 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3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1호[공유수면 변경실시계획인가사항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2호[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4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57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58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60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76호[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신설 및 교체 행정예고]..... 5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행정지원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의무 등) 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세입)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시기)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구에 두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정규직 전환) 이사장은 최초 공단 설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 나.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등(안 제7조 ~ 제11조)
-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13조)
- 라.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 마. 이사회 구성(안 제16조)
- 바. 직원의 임면(안 제20조)
- 사. 공단의 사업(안 제21조)
-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2조)
-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4조)
-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5조)
-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6조, 제27조)
- 타. 공단의 감독(안 제29조 ~ 제31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9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 명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 형 춘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에일린의 뜰 107동 702호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주차장, 진입로)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산하동 933번지

나. 면적 : 2,158㎡(주차장 : 2087㎡, 진입로 : 71㎡)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5. 7. ~ 2023.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91호

공유수면 변경실시계획인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 년월일	피허가자		장소	면적 (m ²)	공사기간	실시계획신고 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5. 9.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장 (도시과장)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762~828일원	변경 전 1,416 변경 후 1,585	변경 전 2018. 10 ~ 2019. 5. 변경 후 2018. 10 ~ 2019. 6.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5. 7.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936-9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5m²
 - 나. 기 간 - 2019. 05. 08. ~ 2023.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공원녹지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9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수2로 49-1 외 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18B 36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2 길 11	2019-05-09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18B 22L, 23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 길 19-1	2019-05-09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25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 길 25	2019-05-09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말하는 지역이며 화봉지역의 대표적인 옛 지명이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지구 4B 2L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5로 14	2019-05-09	매산로에서 분기된 도로로 연계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5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22B 3L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2로 49-1	2019-05-09	호수지구를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9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호수2로 49-1	호수지구 22B 3L	2019. 5. 9.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557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안 제19조)
- 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안 제20조)
- 다.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안 제21조)
- 라. 매각재산의 인수증(안 제22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나.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
- 전화번호 : 052)241-7531, 팩스번호 : 052)241-751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2조제2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 조례 제3조제3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 서식]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2조제2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 조례 제3조제3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558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제15조)
- 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안 제4조)
-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정비
(안 제5조 ~ 제8조)
-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안 제10조)
- 마.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6조)
- 바. 주민총회·자치계획 조항 신설(안 제19조 ~ 제21조)
- 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22조)
- 아. 보칙 보험 조항 신설(안 제25조)
- 자. 부칙 경과조치 정비(안 부칙 제3조 ~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주민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연암동, 북구청) 1층 주민소통실
- 전화번호 : 052-241-7264
- 팩스번호 : 052-241-7269
- E-mail : eunk1004@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5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② 제①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7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추첨 방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2.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

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2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1000분의 1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①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제4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560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명칭 변경 및 [별표]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문 명칭 변경(안 제2조)

- 버스 및 택시 정류소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정류소 → 정류소 및 승차대

나. [별표] 서식 정비

- 나목 학교 절대 정화구역 표지판 →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 다목 버스 및 택시 정류소 표지판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지판
- 라목 어린이 놀이터 표지판(삭 제)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금연지도)

- 전화번호 : 052-241-8302, 팩스번호 : 052-241-810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버스 및 택시 정류소”를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정류소”를 “정류소 및 승차대”로 한다.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표지판



※ 상기 도면은 예시임.

나.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지판





2.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u>버스 및 택시 정류소</u>의 금연구역 범위는 <u>버스 및 택시 정류소</u> 편의시설 내부로 한다. <u>정류소</u> 편의시설 내부는 <u>정류소</u> 편의시설 지붕 가장 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 내부를 말한다.</p>	<p>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u>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u>----- <u>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u>----- -----. <u>정류소 및 승차대</u>---- -----<u>정류소 및 승차대</u>----- ----- -----.</p>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p> <p>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p> <p>가. 도시공원 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상기 도면은 예시임.</p>	<p>(현행과 같음)</p>
<p>나. 학교 절대 정화구역 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나.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다. 버스 및 택시 정류소 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현행	개정안
 <p>라. 어린이 놀이터 표지판</p>  <p>2.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p>	 <p>라. (삭제)</p> <p>2.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p>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19. 3. 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19. 3. 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19. 3. 7.>
4. <삭제 19. 3. 7.>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576호

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신설 및 교체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신설 및 교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신설 및 교체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복구청(문화체육과)
3. 설치위치

구분	설 치 장 소	주 소	비고
1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교체 25대 신규 3대

5. 예고방법 : 울산 복구청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6. 예고기간 : 2019. 5. 9. ~ 5. 28.(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 총무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연암동)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사무실
- 전 화 : 052) 241 - 7364
- F A X : 052) 241 - 736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 임】

의 견 서

사 업 명	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대 표 자 (기관/단체일 경우)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오토밸리복지센터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